



#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

## 화물차주 특징

### 화물차주 정의

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화물차주,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특수자동차, 일반형/특수형 화물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, 시멘트, 철강재,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등이 이에 속합니다.

- **개인 운송사업자** 주선업체,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차주 개인이 직접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음
- **지입차주**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음

### 주요 사고유형

화물차주는 화물의 상·하차, 크레인, 지게차 등에 의한 중량물 취급, 대형차량 운전 및 장거리 운행, 불규칙한 운행시간, 장시간 근무 및 야간운행 등으로 다양한 사고에 노출됩니다.



화물 충돌

떨어짐

깔림

끼임

교통사고

화재·폭발·누출

## 주요 작업 및 유해·위험요인



### 작업 내용

화물을 차량 위에 운송 가능한 상태로 적재하거나 운반구(차량) 위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작업장의 적재 장소에 내려놓는 일련의 작업

\* 사용도구/설비 : 인력작업, 대차, 지게차, 크레인 및 리프트 등

### 유해 위험 요인

- 화물의 적재·하차 시 적재함이나 차량 상부, 화물 위에서 떨어짐
- 화물 적재방법의 불량으로 화물 떨어짐
- 경사진 도로 위에서 차량 밀림으로 끼임
- 무리한 화물 적재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등



### 작업 내용

화물의 종류, 수량 및 행선지 등이 기록된 운송기록장을 확인하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적재된 화물의 적재높이, 무게 등을 고려하여 행선지까지 운송하는 작업

### 유해 위험 요인

- 적재물 운반 중 후진 중인 차량에 깔림
- 차량 점검·정비 중, 적재함 등에 끼임
- 과속, 신호위반 등 「도로교통법」 불이행에 따른 교통사고
- 과로 상태 운전, 운전 시 주의 부족으로 인한 사고
- 야간, 빗길, 안개길 등에서 차량 운전 시 감속 주행 미실시 사고



## 화물차주 주요 재해사례



떨어짐



화물 상차작업 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더 떨어짐

예방 대책



- 적재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별도 승강설비 설치
- 화물 상·하차 시 안전모 착용
- 작업 통제·관리하는 작업지휘자 지정·운영
- 유도로프 등 이용하여 비닐 및 천막씌우기 작업
- 화물 결속상태 확인 철저
- 작업방법, 위험요인 등 근로자 주지



맞음



화물트레일러 위 떨어진 원목에 맞음

예방 대책



- 상차 시 벨트, 로프 등으로 화물을 견고히 고정
- 화물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
-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
- 화물 고정용 손상된 섬유로프, 벨트 사용 금지
-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
- 위험구역 근로자 출입금지, 작업지휘자 지정·운영



교통 사고



제동장치 작동 불능으로 인한 교통사고

예방 대책



- 차량 제동장치 및 주차 브레이크, 조향장치 등 작동상태 확인
- 연료장치 및 각종 오일류 주기적인 점검
-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 및 앞지르기, 끼어들기, 과속금지, 도로 관계법령의 제한속도 및 적재물의 규정 준수와 급출발, 급정지, 급선회 등 금지



## 사망사고 예방 'Safety Alert Message(SAM)'

- ☑ 차량 주정차 시 제동장치 체결 및 쇄기(고임목) 설치하고, 화물 상·하차 작업 시 안전모를 꼭 착용한다.
- ☑ 화물 상·하차 시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충돌, 적재된 화물에 맞음 주의한다.
- ☑ 차량 입·출차 시 주변 근로자 충돌, 운전석 내리던 중 넘어짐·떨어짐 사고 주의한다.

###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

1.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)
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), 제68조(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)
3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)
4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제9항
5. 공단 기술지원규정(KOSHA GUIDE) K-1-2023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